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7호

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### 2023년 1월 26일

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: 2023. 1. 26.~2023. 02. 08.
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주현진	1985.○.4.	0178220274100001975	₩30,900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○○
2	박진우	1986. 🔾 . 15.	0178220274100001997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○○
3	강명선	1970.○.30.	0178210274100004984	₩17,566,910	서울특별시 금천구
			0178210274100004982	₩13,860,000	독산로 58 가길 ○○
4	㈜티엘네트	110111-5647007	0178230274100000010	₩4,000,00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
	웍스				조원로 40-1, 4층
5	㈜엘아이엠 인베스트	110111-7625853	0178220274100000528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5 번길 7-12, 청백빌딩 504호
6	조치훈	1989. 🔾 . 30.	0178220274100001225	₩7,725,000	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○○
7	주식회사 더해피	120111-0932948	0178220274100001226	₩7,725,000	인천광역시 계양구 게양대로 121, 401 호
8	주식회사 공팔리터	110111-5586958	0178220274100001659	₩7,725,000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4, 120-1 호 B 층
9	강명석	1958.○.2.	0178220274100001598	₩3,862,500 ₩5,115,600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 1 길 ○○
			0178200274100008252		
10	주식회사 에드워드 투자그룹	110111-7636214	0178220274100001651	₩3,862,5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길 6, 9 층
11	함훈건	1996. 🔾 . 12.	0178220274100000546	₩7,725,000	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○○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11층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

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 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
### 7.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중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